

부산지방법원 2019. 12. 12 선고 2019가단22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

피고B

특별대리인 C

변론 종결2019. 11. 21.

판결 선고2019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D 도로 248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. 1. 5. 접수 제3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. 12. 29.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민희진

별지